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

신청 대상	□대상자	성 명	(한자 :)
		등록기준지 (본 적 지)	
		주민등록 번 호	-

신청 내용

1. 등록사항별 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( )통 ②기본증명서( )통
③혼인관계증명서( )통 ④입양관계증명서( )통
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 )통

2. 일부사항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( )통 ②기본증명서( )통
③혼인관계증명서( )통 ④입양관계증명서( )통
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 )통

3. 종전「호적법」에 따른 제적·본적지:_____
호주: _____대상자: _____의
제적등본( )통

주민등록번호(뒷부분6자리숫자의) 공개신청 여부	□공개신청 □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	공개신청 사유	□ 1.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□ 2.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, 양부모, 배우자,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□ 3.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□ 4.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

※수수료	**1통당 120엔**				
청구사유					
소명자료					
신청인	성명	(인/서명)	생년월일	신청인 자격	의
	주소			휴대 전화번호	
				전화번호	
접수번호	20 년 월 일 **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귀하**				

※ 법 제117조 3호 : 제14조 제1항·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.
※ 발급관서가 "시"인 경우에는"구"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.

2015.01.05